

I. 서론

- 한국의 보험산업은 1899년 태동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음.
 - o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그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과거 어느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음.
- 한국의 보험산업은 194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o 손해보험의 경우 1945년에서 1948년에 걸쳐 7개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13개 국내회사 및 4개의 외국사로 총 17개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음.
 - o 생명보험의 경우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설립되어 지금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는 총 6개 회사임.
 - 1963년부터 1986년까지는 이들 6개 회사만 영업을 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규진입자유화정책에 따라 많은 신설생명보험사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70년대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의한 자금동원 수단으로서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음.
 - o 특히 1978년에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세공제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몇차례에 걸친 공제액의 증가에 따라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었음.
 - o 이에 따라 GNP와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생명보험자산의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였음.

- 한편, 이러한 신설생명보험회사의 대량진입은 그후 생명보험시장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들 신설사들은 초기사업비의 과다지출로 인해 지불능력을 약화시키게 되었음. 이에 최근 한국은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자체구조조정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또한 1995년 12월 OECD가입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된 보험산업에 대한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는 보험산업내의 일부 신설사들의 경영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 o 최근 몇 년간의 지급여력제도강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는 이를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o 1997년말 국제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각서에 따라 금융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에서도 4개 신설 생명보험회사가 퇴출되고 양대보중보험사는 하나로 통합된 바 있음.
- 이러한 최근 일련의 환경변화의 과정에서 보험산업의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가 진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보험산업은 급속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
 - o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급속한 변화 및 발전사항에 대해 개관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여러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o 또한 이 책은 그동안 한국의 보험산업환경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 외국 투자가, 업계, 학계 등의 주요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서 주로 한국의 보험산업의 현황 및 현안, 제도, 규제완화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함.

- 이 책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먼저 한국보험산업의 수보, 성장, 자산 등의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한국보험산업의 이슈와 구조조정 및 보험업법의 개정 등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하고 함.
 - o 제3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보험산업의 제도적 변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소개함.
 - o 제4장에서는 최근 보험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유화의 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함.

II. 한국보험산업의 현황

II.1. 한국보험산업에 대한 개관

II.1.1. 보험회사수

- 1999년 2월말 현재 보험회사는 46개사이며, 이중 생명보험회사는 29개사, 손해보험회사는 17개사임.
- 1999년 2월말 현재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보험사는 15개사임.
 - o 생명보험시장에서 영업중인 회사는 11개사이며, 이중 합작사가 6개사 외국사가 5개사임.
 - o 손해보험시장에서는 4개사가 영업중임.

<II-1> 보험종목별 보험회사수

(’99. 2월말 현재)

구 분	국내사	외국사	합작사	Total
생명보험	18	5	6	29
손해보험	11	4*	-	15
재보험	1	-	-	1
보증보험	1	-	-	1
Total	31	9	6	46

* "Reliance"사는 1999. 2. 9에 본인가되어 '99.4 이후부터 영업할 계획임.

II.1.2.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추이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힘입어 외형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음.
 - o FY'97 생손보 전체 수입보험료와 총자산규모를 FY'70과 비교할 때

수입보험료는 289억원에서 65조 2,742억원, 총자산도 FY'70의 524억원에서 FY'97의 110조 8,65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GDP대비 수입보험료는 FY'70의 1.0%에서 FY'97 15.5%로, GDP대비 총자산의 비중도 1.9%에서 26.3%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II-2> 보험산업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7.2/4	1998.2/4
수입보험료	29	141	991	5,004	19,633	46,212	51,630	65,274	26,967	28,881
수보/GDP	1.0	1.4	2.6	6.2	10.9	13.1	13.2	15.5	-	-
총자산	52	207	1,597	8,158	35,838	82,388	99,517	110,865	108,416	110,206
총자산/GDP	1.9	2.0	4.2	10.1	20.0	23.4	25.5	26.3	-	-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 생보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FY'70 146억원에서 FY'97 48조 9,559억원, 총자산은 FY'70 267억원에서 FY'97 90조 9,21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수입보험료와 총자산의 비중은 FY'70 각각 0.5%, 1.0%에서 FY'97 11.6%와 21.6%로 증가하였음.

- o 또한, FY'97 2/4분기(4~9월)에 비해 FY'98 2/4분기(4~9월)의 수입보험료는 10.1% 증가하였음.

- 한편, FY'97 2/4분기(4~9월) 대비 FY'98 2/4분기(4~9월)의 단체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인 반면 개인보험과 보장성보험은 각각 9.0%, 7.0% 증가하였음.

- o 특히, 단체보험은 -26.5%의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낸 바,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II-3> 생명보험산업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7.2/4	1998.2/4
수입보험료	15	67	604	3,987	16,044	35,288	38,163	48,956	19,230	21,175
수보/GDP	0.5	0.6	1.6	4.9	8.9	10.0	9.8	11.6	-	-
개인보험	42.8	72.9	59.9	77.3	75.0	77.9	72.3	67.9	74.7	81.4
단체보험	57.2	27.1	40.1	22.7	25.0	22.1	27.7	32.1	25.3	18.6
저축성	-	-	97.2	94.1	96.7	90.8	87.5	86.4	81.5	80.2
보장성	-	-	2.8	5.9	3.3	9.2	12.5	13.6	18.5	19.8
총자산	27	106	989	6,922	31,002	69,677	83,289	90,921	90,003	89,104
총자산/GDP	1.0	1.0	2.6	8.6	17.3	19.8	21.4	21.6	-	-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 손보의 경우에도 원수보험료와 총자산규모는 FY'70 143억원과 257억원에서 FY'97 각각 16조 3,182억원과 19조 9,4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원수보험료와 총자산의 비중은 FY'70의 0.5%와 0.9%에서 FY'97에는 3.9%와 4.7%로 각각 증가하였음.
- FY'98 2/4분기(4월~9월)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하였으나 총자산은 14.6% 증가하였음.

<II-4> 손해보험산업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7.2/4	1998.2/4
원수보험료	14	74	388	1,017	3,590	10,924	13,466	16,318	7,737	7,706
수보/GDP	0.5	0.7	1.0	1.3	2.0	3.1	3.5	3.9	-	-
총자산	26	101	608	1,236	4,836	12,711	16,228	19,944	18,413	21,102
총자산/GDP	0.9	1.0	1.6	1.5	2.7	3.6	4.2	4.7	-	-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II.1.3.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

- FY'98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은 8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어 FY'97 생명보험이 75%로 줄어들었으며, 손해보험은 25%로 증가하였음.

- o FY'97 2/4분기(4~9월)와 FY'98 2/4분기(4~9월)를 단순비교할 경우 생보시장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음.

<II-5> 수입보험료 기준 손·생보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7.2/4	1998.2/4
시 장 점 유 율	생보	50.5	47.2	60.9	79.7	81.7	76.4	73.9	75.0	71.3	73.3
	손보	49.5	52.8	39.1	20.3	18.3	23.6	26.1	25.0	28.7	2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II.2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국제비교

II.2.1. 수입보험료

- OECD 통계연감(1989-199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1996년을 기준으로 세계 6위 규모인 약 638억 달러로서 OECD 전체의 약 3.2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o 특히,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세계 6위권인 약 464억달러, 손해보험은 세계 10위권인 175억달러를 거수하여 각각 4.63%와 1.7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II-6> OECD 회원국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U.S 백만\$)

연도 국가	1994			1995			1996		
	생보	손보	합계	생보	손보	합계	생보	손보	합계
호 주 ²⁾	16728	13878	30606	15323	14116	29439	16073	16558	32631
오스트리아	3592	8528	12120	4656	9588	14244	6310	9690	16000
벨 기 에	4838	7511	10349	6250	9207	15456	6923	8897	15820
캐 나 다	15685	13071	28756	16792	13280	30072	11246	19004	30249
체 코	260	775	1035	352	921	1273	403	1112	1515
덴 마 크	4630	5129	9758	5785	5590	11376	6743	5587	12330
핀 란 드	742	2373	3115	1643	2832	4474	2586	2731	5317
프 랑 스	71505	47745	119250	86341	55776	142117	93226	56062	149288
독 일	59915	108490	168405	71565	128636	200201	72215	124737	196952
그 리 스	786	870	1656	921	1004	1925	1032	1161	2193
형 가 리	229	665	894	282	665	947	321	687	1008
아이슬랜드	8	220	228	9	228	237	8	226	234
아 일 랜드	2664	2318	4982	2979	2705	5684	3853	2976	6829
이탈리아	12992	25943	38935	15700	26956	42655	18640	29608	48248
일 본	298331	108389	406720	326908	121311	448219	269843	106799	376642
룩셈부르크	1150	432	1582	3649	507	4156	3084	548	3632
멕시코	2137	4169	6306	1269	2614	3883	1419	2797	4217
네덜란드	15211	14696	29907	19449	17060	36508	20041	17079	37120
뉴질랜드	735	953	1688	659	1196	1854	930	1262	2193
노르웨이	2728	3659	6388	2981	3868	6850	3068	3918	6987
폴란드	566	1261	1827	635	1672	2307	875	2185	3060
포르투갈	1251	2381	3632	2092	2765	4857	2603	2980	5584
스페인	10806	14890	25696	11079	16889	27968	12971	17414	30385
스웨덴 ¹⁾	7047	4641	11688	7898	5089	12988	8965	5249	14214
스위스	16642	21345	37987	21982	22464	45447	22828	16138	38967
터 키	130	954	1084	178	1215	1394	232	1356	1588
영국	74557	63599	138156	75700	64500	140200	86883	61685	148568
미국	277744	453929	731673	294353	469286	763639	315538	479577	795115
한국	33470	11025	44495	43730	14767	58498	46351	17462	63813

자료 : OECD보험통계연감

주 : 1) 손보의 경우 총원수보험료(direct gross premiums basis)기준

2) 생보의 경우 1994년 및 1995년은 순수입보험료기준

- 한편 국가별 보험가입 밀도(density), 즉 해당 국민의 보험산업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원수보험료의 경우 1,367달러로서 29개 OECD회원국중 중하위권인 16위를 나타내고 있음
- o 생명보험의 경우 1,017달러로 10위, 손해보험의 경우 351달러로 19위를 기록하였음.

<II-7> OECD 회원국의 1인당 보험료(총원수보험료/인구수) 추이
(단위 : 1인당 U.S.\$)

국가	연도	1994			1995			1996		
		생보	손보	합계	생보	손보	합계	생보	손보	합계
호 주		938	646	1584	849	669	1518	879	779	1658
오스트리아		444	873	1317	575	1019	1593	777	983	1761
벨 기 에		472	714	1185	608	830	1439	673	803	1476
캐 나 다		507	352	859	533	370	903	348	535	883
체 코		25	75	100	34	87	121	39	107	146
덴 마 크		885	731	1616	1104	876	1980	1278	878	2156
핀 란 드		146	424	570	321	503	824	504	481	985
프 랑 스		1201	699	1900	1445	818	2264	1569	824	2393
독 일		662	960	1622	788	1147	1935	792	1109	1901
그 리 스		75	78	153	88	92	180	98	105	204
형 가 리		22	64	87	28	65	92	32	67	99
아이슬랜드		26	709	734	29	755	785	31	745	776
아 일 랜드		745	621	1366	829	689	1518	1054	753	1807
이탈리아		202	399	601	247	415	662	291	461	752
일 본		2384	797	3181	2606	889	3495	2141	796	2937
룩셈부르크		2880	1078	3958	8829	1226	10054	7399	1314	8714
멕시코		24	45	69	14	27	41	15	28	42
네덜란드		897	822	1718	1169	963	2132	1268	1062	2330
뉴질랜드		208	222	431	184	270	454	256	340	595
노르웨이		629	808	1437	684	863	1547	700	885	1586
폴 란 드		15	33	47	16	43	60	23	56	79
포르투갈		126	236	363	211	273	484	262	292	554
스 페 인		275	356	630	281	405	686	329	418	747
스웨덴		779	529	1308	857	577	1433	1006	590	1596

스 위 스	2206	1381	3586	2880	1605	4485	3091	1550	4642
터 키	2	16	18	3	19	22	4	21	25
영 국	1159	851	2011	1240	856	2096	1467	899	2366
미 국	1016	1577	2593	1037	1607	2644	1107	1632	2739
한 국	753	221	974	984	300	1284	1017	351	1367

자료 : OECD통계연감 1989-1996

주 : 생보의 경우 1995년까지는 순수입보험료기준

II.2.2. 국내총생산에 대한 원수보험료 비중

- 보험산업이 국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중요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GDP대비 원수보험료 비율(penetration)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12.85%로서 OECD 회원국중 룩셈브르크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냄.

- o 생명보험의 경우 9.55%로서 2위, 손해보험의 경우 3.3%로서 9위를 기록하였음.

<II-8> OECD 회원국의 보험침투도(총원수보험료/GDP) 추이

(단위 : %)

국가	연도	1994			1995			1996		
		생보	손보	합계	생보	손보	합계	생보	손보	합계
호 주		5.16	3.55	8.71	4.39	3.47	7.86	4.11	3.64	7.76
오스트리아		1.80	3.54	5.34	1.98	3.51	5.49	2.74	3.46	6.20
벨 기 에		2.08	3.15	5.23	2.29	3.13	5.42	2.55	3.04	5.59
캐 나 다		2.74	1.90	4.63	2.82	1.95	4.77	1.80	2.77	4.57
체 코		0.72	2.15	2.87	0.77	1.97	2.74	0.72	1.97	2.69
덴 마 크		3.16	2.61	5.76	3.33	2.64	5.97	3.85	2.64	6.49
핀 란 드		0.76	2.21	2.97	1.31	2.06	3.37	2.06	1.97	4.03
프 랑 스		5.23	3.04	8.27	5.47	3.09	8.56	5.96	3.13	9.09
독 일		2.63	3.82	6.45	2.67	3.88	6.55	2.76	3.86	6.62

그 리 스	0.80	0.83	1.63	0.81	0.84	1.65	0.84	0.90	1.74
헝 가 리	0.58	1.67	2.25	0.72	1.68	2.39	0.73	1.56	2.29
아이슬랜드	0.11	3.05	3.16	0.11	2.86	2.98	0.11	2.75	2.86
아 일 랜 드	4.93	4.11	9.05	4.61	3.84	8.45	5.40	3.86	9.26
이탈리아	1.14	2.24	3.38	1.30	2.19	3.49	1.38	2.18	3.56
일 본	6.36	2.13	8.48	6.38	2.18	8.56	5.86	2.18	8.04
룩셈부르크	7.86	2.94	10.81	21.03	2.92	23.94	18.14	3.22	21.36
맥 시 코	0.50	0.94	1.44	0.45	0.88	1.33	0.43	0.81	1.23
네덜란드	4.09	3.75	7.85	4.57	3.77	8.33	4.97	4.16	9.13
뉴질랜드	1.44	1.54	2.98	1.10	1.62	2.72	1.41	1.88	3.29
노르웨이	2.21	2.84	5.06	2.04	2.57	4.61	1.94	2.46	4.40
폴 란 드	0.61	1.36	1.97	0.54	1.42	1.96	0.65	1.61	2.26
포르투갈	1.47	2.76	4.23	2.10	2.72	4.81	2.51	2.81	5.31
스 페 인	2.23	2.88	5.11	1.97	2.84	4.81	2.21	2.81	5.02
스 웨 덴	3.45	2.34	5.79	3.28	2.21	5.49	3.56	2.08	5.64
스 위 스	5.98	3.74	9.72	6.66	3.71	10.37	7.46	3.74	11.21
터 키	0.10	0.72	0.82	0.10	0.71	0.81	0.13	0.74	0.87
영 국	6.64	4.88	11.52	6.60	4.56	11.15	7.48	4.58	12.06
미 국	3.98	6.18	10.16	3.92	6.08	10.00	3.98	5.87	9.85
한 국	8.79	2.58	11.37	9.60	2.93	12.53	9.55	3.30	12.85

자료 : OECD통계연감 1989~1996

II 2.3. 외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

-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외국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OECD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 국내에 진출한 외국 생보사(합작사 및 외국사)의 FY'96 원수보험료는 2조 2,153억원으로 생보시장 전체의 약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손보사(지점)의 원수보험료는 461억원으로 손보시장 전체의 약 0.34%를 점유하고 있음.

<II-9> OECD 회원국의 외국계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국가 ¹⁾	연도	1994		1995		1996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호 주		-	37.05	-	38.13	30.32	36.89
오스트리아		37.51	49.25	34.74	47.60	34.36	49.34
벨기에		-	-	-	-	-	-
캐나다		38.19	70.50	38.19	72.06	37.25	63.68
체코		20.85	20.66	20.85	25.63	24.34	30.03
덴마크		7.54	22.15	7.54	32.84	7.48	30.86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9.14	7.83	9.14	7.30	8.48	13.08
그리스		-	-	-	-	-	-
헝가리		98.63	93.96	98.63	92.30	97.07	91.01
아이슬랜드		4.76	0.68	4.76	3.63	4.88	3.57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2.80	-	-	-	-
일본		3.40	3.29	3.40	3.33	3.81	3.33
룩셈부르크		-	-	-	-	91.70	36.03
멕시코		1.13	0.05	1.13	3.87	2.04	6.99
네덜란드		22.36	23.51	22.22	22.29	20.77	20.96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2.48	-	2.48	-	2.80	19.25
폴란드		14.03	-	14.03	1.73	23.89	3.00
포르투갈		12.15	9.12	12.15	15.35	12.11	14.94
스페인		26.69	32.10	26.69	33.09	21.56	29.32
스웨덴		0.00	-	0.00	-	0.00	-
스위스		7.35	10.89	7.35	7.81	-	-
터키		6.60	10.81	6.60	9.82	8.96	10.18
영국		-	-	-	-	21.50	-
미국		12.65	9.81	12.65	10.00	14.34	10.73
한국 ²⁾		6.29	0.39	6.07	0.35	5.81	0.34

자료 : OECD통계연감 1989~1996

주 : 1) 지점 및 대리점 포함

2) 한국 생보의 경우 합작사 포함

- 1998년 4월부터 9월말까지의 한국보험시장에서의 외국보험사의 시장점

유율은 다음과 같음.

<II-10> 한국보험시장에서의 외국보험사 시장점유율('98.4~9)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 체
외 국 보험사	외국사	0.47%	0.27%	0.42%
	합작사	4.02%	-	2.95%
	소 계	4.49%	0.27%	3.37%
국내보험사		95.51%	99.73%	96.63%
합 계		100.00%	100.00%	100.00%

- 1998년 9월말 기준 외국보험사의 납입자본금 및 수입보험료와 점포/대리점/모집인당 수입보험료 비율은 다음과 같음.

<II-11> 외국보험사의 납입자본금 및 영업효율

(단위 : 억원)

구 분		납입 자본금	수입 보험료(A)	점포수 (B)	A/B	대리점수 (C)	A/C	모집인수 (D)	A/D
생 보	외 국 사	푸르덴셜	264	338	15	22.5	-	477	0.71
		네덜란드	410	363	29	12.5	-	840	0.43
		프랑스	162	79	8	9.9	70	119	0.66
		라이나	42	151	9	16.7	952	279	0.54
		아메리카	100	70	11	6.4	404	516	0.14
	합 작 사	동부애틀랜타	402	1,075	54	19.9	1,156	893	1.20
		동양메네프트	739	4,002	395	10.1	122	7,601	0.53
		메트라이프	596	1,018	58	17.6	64	1,579	0.64
		고려CM	480	496	123	4.0	-	567	0.87
		삼신올스테이트	400	1,778	125	14.2	-	2,895	0.61
		영풍메뉴라이프	100	49	5	9.8	-	41	1.20
		고합뉴욕	180	104	28	3.7	167	322	0.32
	평 균	외국사	262	200	14	14.3	239	446	0.47
		합작사	384	1,217	113	10.8	243	1,985	0.61
		국내사	411	9,631	491	19.6	440	12,136	0.79
손 보	외 국 사	AHA	20	170	13	13.1	294	409	0.42
		Cigna	10	25	2	12.5	44	44	0.57
		Vigilant	30	14	-	-	33	-	-
		Reliance	30	-	-	-	-	-	-
	평 균	외국사	20	70	5	14.0	124	151	0.46
		Domestic	314	5,489	285	19.3	3,608	7,080	0.78

II.3 최근 보험시장 현황(통계적 관점)

II.3.1. 개관

- 최근 한국의 금융 및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와 IMF 합의사항 이행 및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경색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금리구조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의 대량해약사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계약이 저조하였음.
 - o 이에 그동안 성장일로에 있던 한국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 게다가 금융 및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경색 및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연쇄도산 등은 대량불량채권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부실자산에 의한 많은 평가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님.
- 생명보험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계약 및 수입보험료, 자산운용 수익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o 경기침체와 기업부도의 증가 및 고용불안 등의 결과로 보험구매력이 감소되어 수입보험료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o 총자산은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기업의 합병·퇴출, 실업증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해약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o 특히, 자산운용측면에서는 FY'98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수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고금리시장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

비 1.2%p 증가한 10.9%를 보이고 있음.

- 이는 FY'98 1/4분기에 비해 0.3%p 낮고, 향후 금리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총자산수익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경기변동에 민감한 손해보험의 경우 경제의 저성장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일반 손해보험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장기보험의 일부는 예정이율과 실세금리와의 차이로 인해 기존계약에 대한 실효해약률이 증대됨에 따라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 자산운용측면에서 손해보험회사는 상장법인으로서 운용자산의 대부분이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가폭락으로 인한 유가증권판매 및 평가손실의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1999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평가손은 장부가의 16.8%가 하락한 1조 2,404억원임.
- 이중 생명보험의 평가손은 장부가의 19.1%인 1조 1,141억원이며, 손해보험의 평가손은 장부가의 8.1%인 1,262억원임.
- 그러나 요즈음 한국의 주가상승¹⁾으로 평가손은 줄어들 것이며, 대출금 및 부동산 등의 자산평가손도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줄어들 것임.

1) 한국의 주가지수는 1998년 12월말 장 마감시 562.46였으나 1999년 3월 19일 주가지수는 604.22임.

<II-12> 상장주식의 평가손(1999.3.31)

(단위 : 억원)

구 분	장부가	시장가격	평가손
생 보	58,484	47,342	-11,141
손 보	15,568	14,306	-1,262
합 계	74,052	61,648	-12,404

II.3.2. 생명보험2)

가. 신계약현황

- FY'98 2/4분기의 신계약건수는 830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p 증가하였으며, 수입보험료는 12조 7,8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5%p 증가하였음.

o 신계약과 수입보험료에 있어서의 놀라운 성장은 양로보험과 단체보험의 판매호조에 기인함.

o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존보험 또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하락하였음.

<II-13> 보험종목별 신계약현황

(단위 : 천건, 10억원, %)

구 분	1996			1997			1997.2/4			1998.2/4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생 존 (개인연금)	3,864 (1,300)	37.8 (6.6)	7,489 (1,319)	1,894 (624)	12.1 (3.0)	3,442 868	1,194 398	21.3 (5.3)	2,071 (517)	621 (107)	6.6 (1.3)	847 165
사 망	5,740	10.8	2,149	10,507	10.1	2,888	4,434	13.2	1,286	5,303	12.0	1,536
생사혼합	1,782	15.3	3,028	2,700	36.4	10,414	1,021	28.3	2,750	1,569	58.5	7,480
개 인 계	11,386	63.9	12,666	15,101	58.6	16,734	6,649	62.8	6,108	7,493	77.1	9,863
단 체	2,306	36.1	7,171	2,018	41.4	11,813	929	37.2	3,613	886	22.9	2,921
합 계	13,692	100.0	19,837	17,119	100.0	28,547	7,578	100.0	9,721	8,379	100.0	12,784

-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 수입보험료를 보면, 단체보험의

2) 주로 보험감독원의 Insurance in Korea(1998)를 인용하였음.

경우 19.2% 하락한 반면, 생사혼합보험은 172% 증가하였음.

- 이러한 생사혼합보험 성장은 보험회사들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약이 급증하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 상품의 판매에 주력하였기 때문임.

나. 보유계약현황

- 보유계약이란 만기, 실효 및 해약으로 인해 해제된 보험계약을 제외한 모든 기존계약 및 신계약을 나타내며, FY'97의 신계약 증가와 함께 보유계약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음.
- FY'98 2/4의 보유계약건수는 3,713만 9천건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4만 7천건(5.2%) 증가한 것임.
- 보유계약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7조 1,646억원으로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보험은 14.6%로 수입보험료는 1조 2,287억원임.
-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10.1% 증가한 반면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존보험은 37.8% 감소함.

<II-14>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단위 : 천건, 10억원, %)

구 분	1996			1997			1997.2/4			1998.2/4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건수	시 장 점유율	수 입 보험료
생 존 (개인연금)	11,918 (2,728)	61.3 (10.8)	11,234 (1,972)	9,324 (2,403)	54.3 (12.3)	11,064 (2,515)	11,197 (2,697)	62.4 (12.9)	5,938 (1,229)	7,723 (1,966)	44.1 (14.0)	3,696 (1,179)
사 망	12,567	14.4	2,633	18,931	18.6	3,795	15,422	18.8	1,784	20,682	26.4	2,217
생사혼합	2,910	5.7	1,048	3,917	8.1	1,651	3,232	6.3	596	4,300	14.9	1,252
개 인 계	27,395	81.4	14,915	32,173	81.0	16,530	29,851	87.5	8,318	32,706	85.4	7,165
단 체	5,556	18.6	3,411	4,866	19.0	3,879	5,441	12.5	1,191	4,433	14.6	1,229
합 계	32,953	100.0	18,326	37,038	100.0	20,409	35,292	100.0	9,509	37,139	100.0	8,393

다. 수지현황

- 생명보험회사의 주요수입원은 크게 보험계약자로부터의 수입보험료와 자산운용수익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1997년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익은 59조 9,32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9,790억원(30.4%p) 증가한 것임.
 - o 앞서 언급했듯이 수입보험료의 증가는 단체보험과 고금리보장 개인 보험의 판매호조에 기인한 것임.
 - o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익가운데 수입보험료는 81.7%(48조 9,56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수익은 15.2%, 기타 3.1%임.
-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의 수입보험료는 큰 변동이 없으나, 지급보험금 및 자산운용비용은 각각 78.5%, 215.6%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II-15> 생명보험회사의 수지현황

(단위 : 10억원)

구 분	수 익				지 출				
	보험료 수 입	자산운용 수 익	기타	합계	지 급 보험금	사업비	자산운용 비 용	기타	합계
1996	38,333	7,584	36	45,953	24,545	6,833	820	13,755	45,953
1997	49,142	9,096	1,694	59,932	41,176	7,175	1,971	9,610	59,932
1997.2/4	19,320	4,110	45	23,475	13,365	3,418	326	6,366	23,475
1998.2/4	21,219	4,782	58	26,059	23,859	3,369	1,029	△2,198	26,059

- 1997년의 총비용은 59조 9,32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0.4% 증가하였음.

- 총비용중 지급보험금은 41조 1,760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67.8% 증가한 것이며, 사업비는 5.0% 증가하여 총 7조 1,750억원이고 자산운용비용은 140.4% 증가한 1조 9,710억원임.
- 지급보험금의 증가는 해약률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자산운용비용의 급증은 투자자산관리비용의 상승과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에 기인함.
- 한편,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수의 감축과 외야직원(field staff)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다운사이징한 결과라 할 수 있음.

라. 자산현황

- FY'97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FY'96에 비해 9.2% 증가한 90조 9,210억원임.

<II-16> 생명보험회사의 자산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6		1997		1997.2/4		1998.2/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운용 자산	현·예금	13,117	15.7	13,584	14.9	14,712	16.3	9,736	10.9
	부 동 산	21,387	25.7	23,480	25.8	23,833	26.5	28,987	32.5
	대 출 금	38,227	45.9	41,771	45.9	40,005	44.4	37,900	42.5
	유가증권	6,007	7.2	7,348	8.1	6,672	7.4	7,637	8.5
	계	78,738	94.5	86,183	94.8	85,223	94.7	84,259	94.5
비운용자산		4,551	5.5	4,740	5.2	4,780	5.3	4,844	5.4
총 자 산		83,289	100.0	90,923	100.0	90,003	100.0	89,104	100.0

- 총자산중 대출금은 41조 7,710억원(49.5%)로 가장 크며, 유가증권 23조 4,800억원(25.8%), 현·예금 13조 5,840억원(14.9%), 부동산 7조

3,480억원(8.1%) 순입.

-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에서 여타 자산은 감소한 반면 운용자산중 유가증권은 증가하였음.

마. 외국사실적

- FY'97 한국에는 5개의 외국생명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5개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금액은 4조 1,170억원, 보유계약금액은 7조 6,200억원, 수입보험료는 1,660억원임.
 - FY'97 외국사의 수입보험료는 전체시장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2,830억원으로 그중 운용자산이 74.6%인 2,130억원임.

II.3.3. 손해보험³⁾

가. 계약현황

- FY'97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16조 3,18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8,520억원(21.2%) 증가하였음.
- 원수보험료를 보험종목별로 보면, 장기보험의 경우 FY'96에 2위였던 시장점유율이 FY'97에는 44.0% 증가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FY'97의 증가율이 2.4%에 그쳐 전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음.
 - 보증보험은 7.9%, 특종보험 5.6%, 개인연금 5.5%, 해상보험 2.5%, 화재보험 2.0%의 순입.
 -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에서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화

3) 주로 보험감독원의 Insurance in Korea(1998)를 인용하였음.

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보증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및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증가하였음.

<II-17>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10억, %)

구 분	1996			1997			1997.2/4			1998.2/4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화 재	359	-5.1	27	322	-10.4	20	172	-	22	142	-17.4	1.8
해 상	415	-8.4	31	399	-3.9	25	178	-	2.3	189	62	2.5
자 동 차	6,031	20.4	44.8	6,176	2.4	37.9	3,217	-	41.6	2,790	15.3	36.2
보 증	649	-7.2	4.8	1,294	99.2	7.9	368	-	4.8	689	87.2	8.9
특 종	765	26.0	5.7	921	17.8	5.6	467	-	6.0	515	10.3	6.7
개인연금	872	21.7	6.5	905	3.8	5.5	466	-	6.0	362	22.3	4.7
소 계	9,030	15.6	67.5	10,017	10.2	61.4	4,869	-	62.9	4,685	-3.8	60.8
장 기	4,375	43.0	32.5	6,302	44.0	38.6	2,868	-	37.1	3,020	5.3	39.2
합 계	13,466	23.3	100.0	16,318	21.2	100.0	7,737	-	100.0	7,705	-0.4	100.0

- FY'97 총경과보험료는 15조 580억원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이와같은 경과보험료의 높은 증가율은 장기보험의 경과보험료가 45.9%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II-18> 손해보험 종목별 경과보험료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6			1997			1998 2/4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화 재	278	2.8	2.2	270	-2.6	1.8	123	-11.5	1.7
해 상	272	-6.9	2.2	238	-12.4	1.6	121	0.0	1.7
자 동 차	5,391	21.2	43.6	5,883	9.1	39.1	2,773	-4.4	38.3
보 증	609	5.6	4.9	698	14.6	4.6	483	48.2	6.7
특 종	578	23.2	4.7	704	21.8	4.7	349	5.8	4.8
개인연금	875	22.5	7.1	905	3.4	6.0	362	-22.5	5.0
소 계	8,003	18.2	64.7	8,698	8.7	57.8	4,212	-1.7	58.2
장 기	4,358	42.1	35.3	6,360	45.9	42.2	3,026	-5.9	41.8
합 계	12,361	25.6	100.0	15,058	21.8	100.0	7,238	13.2	100.0

- 손해보험 중목별 경과보험료는 장기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특종보험, 보증보험의 순임.
- o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에서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화재보험의 경과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보증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및 해상보험의 경과보험료는 증가하였음.

나. 보험영업실적

- FY'97 총보험영업손실은 경과보험료의 15.2%인 2조 2,810억원임.
- o 이와같은 보험영업손실은 국가경제의 침체에 따른 파산기업증가로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 o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의 발생손해액은 67% 감소한 반면, 만기(장기) 및 해약환급금은 105.7% 증가하여 손해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98.3% 감소하였음.

<II-19> 손해보험의 보험영업실적

(단위 : 10억원)

구 분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장기만기/ 해약환급금	순사업비	보험영업이익
1996	12,361	9,899	2,141	3,390	-1,005
1997	15,058	13,145	4,145	3,852	-2,281
1997.2/4	8,210	7,387	1,323	1,888	-858
1998.2/4	8,153	2,409	2,721	1,761	-1,701

다. 경영실적

- 1997년의 총영업손실은 1조 630억원임.
- o 이중 보험영업손실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투자수익은 1조 2,180억원으로 12.1%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투자포트폴리오중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이 총투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의 영업손은 355.8% 증가함.

<II-20>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실적

(단위 : 10억원)

구 분	보험영업손익	투자손익	총영업수익
1996	-1,005	1,087	82
1997	-2,281	1,218	-1,063
1997.2/4	-858	643	-215
1998.2/4	-1,701	721	-980

라. 자산현황

- FY'97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규모는 19조 9,440억원으로 전년대비 22.9%인 3조 7,160억원 증가하였음.
 - 자산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32.1%, 대출금 22.4%, 현·예금 18.6 %, 부동산이 8.8%, 비운용자산이 18.1%로 나타남.
 - 유가증권과 부동산은 각각 1.7%p,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의 자산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은 늘어난 반면, 현·예금 및 대출금은 감소하였음.
- 그러나 대출금과 현·예금의 경우 각각 0.5%p,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총자산의 증가는 그 구성비가 30.4%에서 32.1%로 증가한 유가증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대출금은 7,600억원이 증가하여 4조 4,680억원에 달함.

<II-2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6		1997		1998.2/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운용 자산	현·예금	3,315	20.4	3,710	18.6	3,389	16.0
	부 동 산	4,939	30.4	6,407	32.1	8,295	39.3
	대 출 금	3,708	22.9	4,468	22.4	3,757	17.8
	유가증권	1,393	8.6	1,753	8.8	2,028	9.6
	계	13,355	82.3	16,338	81.9	17,468	82.7
비운용자산		2,873	17.7	3,606	18.1	3,633	17.2
총 자 산		16,228	100.0	19,944	100.0	21,102	100.0

마. 외국사 국내지점 실적

- 한국의 손해보험시장에는 AHA, CIGNA, VIGILANT 3개 외국사가 국내지점을 통해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 3개사는 손해보험 전종목을 영위하고 있음.
- o 1999년 2월에는 "Reliance"사가 시장에 신규진입하여 영업을 준비하고 있음.
- FY'97 이들 3개 외국사 국내지점의 원수보험 수입보험료는 46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시장점유율인 0.3%와 동일한 수준임.
- o 3개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FY'98 2/4 분기의 보험영업이익은 73.6% 증가하였음.

<II-22> 외국사 국내지점의 보험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보험영업수익
1996	46,132	0.3	41,783	17,525	-2,894
1997	45,564	0.3	43,231	23,534	-8,300
1997 2/4	23,861	0.3	21,851	11,213	-4,131
1998 2/4	20,990	0.3	20,872	8,243	-1,091

- 1997년의 총영업손실은 42억 7,000만원 정도임.
- o 이중 보험영업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투자수익 또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o 3개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FY'98 2/4분기(4~9월)의 총영업이익은 117.3% 증가하였음.

<II-23> 외국사 국내지점의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보험영업수익	투자수익	총영업이익
1996	-2,894	4,536	1,642
1997	-8,300	4,026	-4,274
1997 2/4	-4,131	2,039	-2,092
1998 2/4	-1,091	1,454	362

- 원수보험료 기준 외국사 국내지점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원수보험료가 31조 480억원인 특종보험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자동차보험 9조 1,940억원, 해상보험 3조 860억원 순임.

<II-24> 외국사국내지점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장기	합계
1996	4,581	3,143	8,063	40	30,267	38	46,132
1997	2,205	3,086	9,194	12	31,048	19	45,564
1997.2/4	1,059	1,431	4,025	4	17,327	15	23,860
1998.2/4	929	1,453	4,375	6	14,227	-	20,990

II.4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

II.4.1. 주요 이슈에 대한 개관

- 1996년 이후 국내보험산업은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속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 왔음.

- 특히, 1997년말의 금융 및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불황과 금리상승으로 국내보험산업은 대량해약사태와 신계약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보험료의 성장률도 둔화되었음.
- 또한, 기업들의 도산사태로 불량채권이 양산됨에 따라 보험회사도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은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더욱 촉진한 반면,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96년 정부는 보험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신설생보사들의 과도한 사업비로 인한 누적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여력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서서히 생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새로운 지급여력기준에 의거하여 이들 생보사들이 자본금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정부는 OECD 가입과 더불어 보험산업의 규제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96년 4월부터 손해보험에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보험시장 자유화계획에 따른 2단계 재보험자유화조치에 의거 선박, 자동차, 보증, 적하, 상해, 근재 및 장기보험 등에 대한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이 폐지되었음.

- 1997년도의 주요 정책적 이슈는 진입장벽의 철폐를 포함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및 기타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먼저 시장개방조치로서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의 폐지 및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의 제정, cross-border 허용종목의 확대, 손해보험중

개인제도 및 생명보험 독립대리점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짐.

- 한편, 자유화조치로는 상해, 질병, 개호보험에 대한 생존보간 업무영역의 확대, 화재, 특종, 기술, 배상책임, 동산종합보험 등 3단계 재보험시장의 자유화조치를 통한 재보험의 전면자유화, 생명보험의 예정위험을 및 이차배당, 손해보험의 화재, 자동차, 수출입적하 및 가계성특종보험에 대한 요율자유화 등이 이루어짐.
- 기타 규제완화 조치들로는 외국보험회사 국내현지법인의 모회사로부터의 외화차입허용을 포함한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5대계열기업집단의 생명보험업에 대한 한시적 참여허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생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에 대한 제제조치와 아울러 증자명령을 내림.

- 1998년도에는 1997년말의 금융 및 외환위기 여파로 시장자율기능과 경영의 건전성제고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음. 아울러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되었으며, 금융감독체계에도 대변혁이 이루어졌음.

- 전체 금융시스템내의 불안요인을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단일감독기구로 통합되기에 이룸.
- 아울러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명보험의 경우 지급여력기준과 기준미달시 제재조치 및 지급여력인정항목을 개정함.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지급여력기준과 지급여력인정항목을 변경하였으며, 보험종목별로 별도의 지급여력기준액을 도입하였음. 또한, 해외재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지급여력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지급여력기준 미달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도입함.

- 이와 아울러 금융시스템내의 시장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의 자율성 촉진, 자동차보험의 요율자유화, 생명보험중개인제도 도입 및 대외개방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짐.

II.4.2.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98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국제, 태양, 고려, BYC등 4개 생보사에 대해 퇴출결정을 내렸음. 이들 4개 생보사는 계약이전방식으로 우량생보사에 인수됨. 금감위는 총 22개(18개 생보사, 4개 손보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들 4개사는 계획의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경제부에 이들 퇴출보험사의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음.
- 부실생보사 퇴출결정('98.8.11)
 - 영업정지조치
 - '98년 8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22개(생보사 18개사, 손보사 4개사)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4개 생보사에 대해 '98년 8월 11일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내렸음.
 -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여 실현가능하나 2000년 9월까지 지급여력비율 최저기준(0%) 달성여부가 불명확한 7개 생보사에 대해서는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 이들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와 각서를 분기별로 점검해 계획이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경영진교체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이밖에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확실시되는 7개 생보사와 2개 손보사등 9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 퇴출생보사 계약이전 결정('98.8.21)

- 이에 따라 국제, 태양, 고려, BYC등 4개 퇴출 생보사들의 보험계약은 각각 제일, 삼성, 홍국, 교보 등의 생보사에 이전되게 됨.

- 보증보험사 합병('98.11.25)

- 별도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개 보증보험사는 '98년 11월 25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로 재출범하였음.

II.4.3. 보험업법의 개정

- 국내보험제도를 OECD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보험규제를 완화내지 폐지하며 보험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금융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OECD 가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보험업법을 개정하였음.

<II-25> 보험업법 개정의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97.8	○ 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 제도 폐지 ○ 생명보험회사 자본금 상향조정(100억원에서 300억원) ○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상호협정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조항 신설 ○ 보험회사의 타사업 겸영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 변액보험의 구분계리근거 마련 ○ 보험중개인허가 및 자격요건 강화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료제공근거 및 부당목적사용시 처벌규정 신설 ○ 대표계리인의 자격요건 설정
'97.12	○ 보험사업 설립허가취소시 청문제도 도입 ○ 보험사업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98.1	○ 보험감독원의 해산과 금융감독원으로의 개편 ○ 보험보증기금 관련조항의 삭제 ○ 보험분쟁조정관련 규정의 전면삭제 ○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신고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권, 보고징구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보험심의위원회 폐지 ○ 보험감독원이 수행하던 보험보증기금의 관리·운용업무의 예금보험공사 이관
'98.4	○ 법령개정 등에 의해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금감위 인가대신 신고로써 갈음 ○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종류를 구체화 ○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보유재산 현황 보고서 의무 폐지
'98.12	○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본금 증액명령 및 증액제한 폐지 ○ 외국에서의 보험사업 영위와 재산운용을 위한 사전 금감위 인가제 폐지 ○ 자본금 증액을 위한 금감위 인가제 폐지 ○ 정보의 설치·이전·폐쇄시 금감위 신고제 폐지 ○ 임원선임 자격중 보험업무 근무경력등 경력기준 폐지 ○ 원보험인수·보유한도 및 재보험처리 제한 폐지

일자	주요내용
'98.12	○ 설립비용과 이연사업비 전액 상각후 배당가능 제한 폐지 ○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시 금감위 인가제 폐지 ○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준비금적립의무 및 사용할 때 금감위 허가제 폐지 ○ 영업양도의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인가만으로도 영업양도 가능 ○ 외국보험사업자 등이 국내사무소 설치시의 허가제 폐지 ○ 금감위 고시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임원검직제한 폐지 ○ 자료제출 명령요건을 감독업무수행과 관련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령요건 명시화 ○ 금감위의 명령요건 구체화 ○ 특별계정을 설정·운영할 수 있는 기준마련 ○ 중개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금감원장의 명령권 구체화

Ⅲ. 보험산업의 제도변화

Ⅲ.1. 금융감독기구 통합

- 정부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재정경제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하고,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1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음.
 - 이에 따라 '98년 4월 1일자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고, 중금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며, '99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출범하였음.
 - '99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등 각 금융권별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 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재정경제부 : 금융관계법령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인가 및 인가 취소업무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의결, 금융감독원 지휘·감독등
 - 금융감독원 : 은행·증권·보험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담당, 금융관련 분쟁조정등
- 금융감독원 총27개국중 보험분야 조직은 7개국으로써 생명보험 및 손해

보험 감독 각 1개국, 손·생보 검사 각 1개국, 보험모집·중개 및 보험
사기 각 1개국이며, 사적연금분야에 대하여는 자산운용·연금감독 1개
국이 있음.

III.2.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III.2.1. 생명보험

-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지급여력기준이 매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1%에
서 책임준비금대비 지급여력비율기준으로 변경되었음('98 6).
 -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기준이 지급여력 부족금액기준에서 지급
여력 부족비율기준으로 변경되었음.

- 지급여력제도의 세부내용

- 지급여력기준 : $\frac{\text{지급여력}}{\text{해약식책임준비금}} \times 100 > 0\%$
-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방식으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
료, 지급비금, 배당준비금을 포함하고 있음.
- 지급여력항목 : 자본금, 잉여금, 해약식초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
익배당준비금, 보험업법97조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액의 합
계액

III.2.2. 손해보험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보험계약자잉여금대비 보유보험료비율” 대
신 새로운 “지급여력기준대비 지급여력의 비율”을 도입하였음. 아울러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기준 미달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하였음('98. 4).

- 지급여력제도의 세부내용

○ 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금액(합산항목-차감항목) $\geq$ 지급여력계산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여력기준(①, ②, ③의 합계)

○ 지급여력기준의 계산(계산사례는 <별첨> 참조)

①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 계산 : 보유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중 큰 항목을 해당 손보사 지급여력 기준으로 책정

㉠ 보유보험료 $\times$ 종목별 지급여력비율

㉡ 최근 3년간 평균발생손해액 $\times$ 종목별 지급여력비율

<Ⅲ-1> 종목별지급여력비율

(단위 : %)

구 분	화 재	해 상	자동차	보 중	기 타
보험료기준	20.8	14.9	18.2	14.9	6.6
보험금기준	39.4	20.6	24.3	20.6	10.1

② 장기보험 및 투자위험의 지급여력기준 계산

• 책임준비금의 1%(계약자배당 준비금 제외)

③ 해외출재위험의 지급여력기준 계산

• 해외출재보험료의 2%

<Ⅲ-2> 지급여력계산시 합산항목과 차감항목

합산항목	차감항목
○ 납입자본금	○ 이연자산
○ 자본·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합산항목	차감항목
○ 97조 준비금	○ 자본의 50%이상이 잠식된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 비상위험준비금	○ 선급비용
○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 퇴직금총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식이상 초과지급금	○ 해당 대손충당금 초과금액
○ 후순위차입금	

Ⅲ.2.3. 지급여력부족비율에 따른 단계별 경영개선조치

- 지급여력기준 미달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음.

<Ⅲ-3> 지급여력부족비율에 따른 단계별 경영개선조치

구 분	미달범위		단계별 조치내용
	생보	손보	
(1단계) 경영개선 권고	0~10%	50%미만	·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대한 주의, 경고 · 자본금증액 · 투자의 제한 및 동결 ·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의 처분 등 · 경영개선권고
(2단계) 경영개선 요구	10~20%	50~100%	· 배당제한 또는 금지 ·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 임원진 교체요구 및 조직의 축소 ·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등 경영개선 요구
(3단계) 경영개선 명령	20%이상	100%이상	· 주식의 일부 소각 및 병합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보험관리인 선임 ·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계약이전, 합병, 제3자의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Ⅲ.3. 보험회계제도

Ⅲ.3.1. 보험회계제도 제정

- '98년 12월 금감위는 보험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공표함.
 - o 동 준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Ⅲ.3.2. 생·손보 공통

가. 유가증권의 분류

- 유가증권은 시장성 및 보유목적에 따라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
 - o 상품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정.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및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은 제외함.
 - o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투자 목적의 유가증권을 말함.
- 유가증권은 취득시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일단 분류가 된 후에는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나. 유가증권의 평가

- 상품유가증권

- 평가손익은 공정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며, 당기손익에 반영됨.
- 공정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관련시장의 종가로 함.

- 투자유가증권

- 투자주식(관계회사주식 등)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장부가과 대차대조표가액과의 차이가 관계사의 당기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함.
- 관계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감 또는 관계사의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자지분조정이나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처리함.
- 투자유가증권중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 출자금 등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당기손실로 처리함.
- 채권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다만, 만기보유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지분법평가손익과 중안기금출자평가손익 제외)은 이를 상제하여 계약자지분조정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함.

- 회계년도중에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함. 이 경우 상품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함.

다. 계약자지분조정 신설

- 계약자지분조정은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기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임.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
 - 공익사업출연기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라.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 포함)에 대하여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함.
 - 불량채권(doubtful debt)는 거래처의 재무상태에 따라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됨.

마. 보유부동산을 포함한 고정자산의 시가평가

-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하도록 시가평가 허용
 - o 고정자산의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합계액이 평가손과 매각손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97조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 o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함.
 - o 투자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함.

바.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

- 채권의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사. 구분계정 회계처리기준

- 퇴직연금보험 판매 등에 대비하여 자산운용과 손익배분 등을 일반계정과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계정 회계처리근거를 신설함
 - o 자산의 운용과 손익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자산과 부채는 각각 구분계정자산 및 구

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기재함.

III.3.3. 생명보험

가.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의 개선

- 기술적 책임준비금은 순보험료식에 의해 적립하도록 하고 장기선급비용 성격인 신계약비는 이연처리하도록 함.
 - o 이는 미국의 GAAP 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나. 보험료 결손제도 도입

- 보험료 결손제도는 보험료 결손이 예상될 때 보험료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토록 하여 사외유출을 억제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o 이 제도는 보험금 현재가치에서 보험료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료적립금 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신계약비를 추가상각 하도록 하는 것임.

다. 신계약비의 이연

- 보험기간이 장기인 경우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는 보험계약 유지기간동안 균등상각됨.
 - o 단, 유지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 상각기간은 7년으로 함.
 - o 한편, 미상각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해약된 해(회계년도 기

준)에 모두 상각함.

- 부가보험료가 초년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보험기간이 장기인 보험의 신계약비는 실제비용으로 계상함.

III.3.4. 손해보험

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 손해보험회사 비상위험준비금의 주원천은 영업이익임.
 - 개정 보험회계규정에서는 과거에 강제화되지 않았던 비상위험준비금(catastrophe reserve)을 적립하도록 함.
- 개정 보험회계규정에서는 손해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때에만 비상위험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과거 손해보험회사들이 종종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전용하던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임.

나. 재보험출재에 따른 책임준비금

- 종전의 보험회계규정에서는 재보험출재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대차대조표에 기장하지 않았음.
 - 그러나 개정 보험회계규정에서는 총책임준비금을 기장한 후 재보험출재계약금액을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III.4. 보험보증기금제도의 개선

- 보험보증기금은 보험회사의 파산 등 지급불능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89년부터 설치하였음.

-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회사의 원활한 보험금지급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보증기금제도를 개선하였음.
 - o '98년 4월 1일 보험보증기금의 관리를 보험감독원에서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였음.
 - o 출연금의 요율을 직전 사업년도 개인수입보험료의 0.1%에서 0.15%로 상향조정하였음.
 - 기금의 규모는 '98년 10월말 기준 생보2,546억원, 손보 696억원임.
 - o 보장한도는 2000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보험금 전액을 보장하고, 2001년부터는 2천만원 한도까지 보장
- 보험상품에 대한 원리금 지급보장(예금자보호법시행령 '98.7.25)
 - o 개인·퇴직보험 : 원리금보장
 - o 법인보험 : 2000. 12. 31일까지 원리금보장
 - o 보증보험 : '98. 7. 31일 이전계약에 한하여 2000. 12. 31일까지 원리금보장

Ⅲ.5. 퇴직연금 도입근거 마련

-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가입하는 「퇴직연금보험제도」가 '97.3.13일 근로기준법과 '97.3.27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그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보험제도 도입(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후 퇴직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세제적격퇴직보험 지정에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퇴직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상황은 아님.
- 근로기준법 및 세법에서 확정된 퇴직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퇴직보험취급기관의 경우 퇴직연금보험은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퇴직일시금신탁은 은행, 투자신탁회사도 취급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보험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야 하고,
 -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보험료 등의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퇴직연금보험(기업연금)제도의 세부사항

- 퇴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기업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적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토록 하는 제도로써 기업이 납입한 보험료는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
- 퇴직연금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상품을 개발중이며, '99년중 도입예정
- 퇴직연금보험 취급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이며, 은행과 신탁은 일시금지급형만 취급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일시금지급형과 연금지급형 퇴직연금보험 모두 취급 가능함.
- 퇴직연금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음.

- 퇴직연금보험제도 도입(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후 퇴직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세제적격퇴직보험 지정을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퇴직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상황은 아님.
- 근로기준법 및 세법에서 확정된 퇴직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퇴직보험취급기관의 경우 퇴직연금보험은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퇴직일시금신탁은 은행, 투자신탁회사도 취급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보험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야 하고,
 -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보험료 등의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퇴직연금보험(기업연금)제도의 세부사항

- 퇴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기업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적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토록 하는 제도로써 기업이 납입한 보험료는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
- 퇴직연금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상품을 개발중이며, '99년중 도입예정
- 퇴직연금보험 취급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이며, 은행과 신탁은 일시금지급형만 취급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일시금지급형과 연금지급형 퇴직연금보험 모두 취급 가능함.
- 퇴직연금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음.

IV. 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

IV.1. 가격자유화

- 가격자유화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배당의 자유화가 먼저 추진되었으며, 이후 예정 이자율과 같은 보험요율의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손해보험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보험종목부터 가격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음.
- '94년이후 단계적 조치 결과 현재까지 대부분의 요율이 자유화되어 1999년 2월 현재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위험률차 및 이차 배당과 예정사업비율중 유지비, 예정위험률이 자유화되었음. 다만, 사업 비차배당은 '99년 4월에 자유화되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은 2000년 4월에 자유화될 예정임.

<IV-1> 가격자유화 일정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자 유 화 내 용		자 유 화 단 계		
		고정요율	범위요율	자유요율
- 보험요율	○ 예정위험률	'62.4	-	'97.4
	○ 예정이자율	'62.4	'98.4	2000.4
	○ 예정사업비율(총한도)	'62.4	'81.4	2000.4
	· 신계약비	'62.4	'81.4	2000.4
	· 유 지 비	'62.4	'81.4	'94.4
	· 수 금 비	'62.4	'81.4	'81.4
- 계약자배당	○ 사차배당	'84.4	'91.4	'95.4
	○ 이차배당	'88.4	'91.4	'97.4
	○ 비차배당	-	-	'99.4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의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자유요율 운영방법에 있어 범위요율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범위요율폭을 벗어난 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만, 범위요율을 벗어난 요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근거자료(경험통계등)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IV-2> 일반손해보험 자유화 일정

자 유 화 내 용		자유화단계	
		범위요율	자유요율
- 일반손해보험	o 선박보험, 배상책임보험등 기업성특종보험(총13종목)	'94.4	'96.4
	o 화재, 수출입적하 및 가계성특종보험(총18종목)	'95.4	'97.4
- 자동차보험	o 할인할증률	'94.4	-
	o 가입자특성요율	'95.4	-
	o 기본보험료	'96.4	'98.4

- 자유요율 운용방법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표준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일정범위내에서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 폭을 현행 범위요율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내에서는 자유로이 설정하여 운용함.

<IV-3> 자유요율 운용방법

자유요율 운용항목		자유요율 운용방법
일반손해보험	o 의무보험	표준요율 상하 $\pm 15\%$
	o 기업성보험	표준요율 상하 $\pm 30\%$
	o 가계성보험	표준요율 상하 $\pm 15\%$
자동차보험	o 개인용	$\pm 3\% \Rightarrow \pm 6\%$
	o 업무용	$\pm 5\% \Rightarrow \pm 10\%$
	o 영업용	$\pm 10\% \Rightarrow \pm 20\%$

- 보험가격자유화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및 이자율이 자유화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자유화될 경우 보험회사간 요율경쟁을 초래하여 보험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IV-4> 자유화하지 않은 이유 및 자유화계획

구 분	자유화하지 않은 이유	자유화계획
사업비차 배당	○ 사업비차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업개시후 10년이상 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무리한 자유화 추진시 계약자배당 확대를 위한 보험사간 과도 한 요율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 이 경우 신설사의 요율덤핑등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의 건전 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99.4 이후
예정 이자율	○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정이자율을 자유화할 경우 보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 예정이자율은 보험기간(10년, 20년, 종신등)이 끝날때까지 변 경이 불가능한 반면,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이차손이 발 생하여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악화시키게 될 것임.	2000.4
예정 사업비율	○ 보험사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 사업비차 배당자유화와 연계하여 자유화할 계획임.	2000.4

IV.2. 진입자유화 및 대외개방

IV.2.1. Cross-border 허용종목 확대

- 정부는 '97년 1월 보험산업의 cross-border 허용종목을 생명보험, 선박보
험, 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동년 2월 15일 국내거
주자가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및 절차,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가 국내에 보험을 판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외국보
험사업자의 보험계약제결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음.<별첨 참조>

- 한편, cross-border 자유화조치에 따라 유보가 없는 보험종목과 관련하여 보험거래 및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IV-5> cross-border 허용종목 현황

허 용 시 기	허 용 종 목
'97년 1월 이전	- o 수출적하보험('93.1) - o 수입적하보험('95.4) - o 항공보험('95.4) - o 재보험('97.4) - o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
'97년 1월 이후	- o 생명보험('97.1) - o 선박보험('97.1) - o 여행보험('97.1) - o 장기상해보험('97.1) - o 3개이상의 국내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보험

* 금융감독원이 해당목록 작성.

-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규정
 - o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체결 가능
 - o 금지행위 : 대한민국의 보험사업자, 모집인, 대리점 및 중개인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 단, 재보험계약은 제외
 - o 광고 : 신문, 라디오, TV, 잡지,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광고가능
 - o 외국보험사업자와 체결가능한 보험여부의 확인 : 생·손보험회
- Cross-border 추가 자유화계획은 결정된 바 없으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추가허용을 검토할 것임. 참고로 우리나라의 cross-border 허용수준은 OECD가입국중 높은 수준임.

<IV-6> OECD회원국들의 cross-border 허용현황

국 가	생보	손보	거주자의 국내 중개인을 통한 해외보험가입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중개인을 통한 가입권유	광고등을 통한 보험가입권유
오스트리아	○	○	○	×	×
벨기에	○	○	○ (운송, 거대위험)	○ (운송, 거대위험)	○ (운송, 거대위험)
캐나다	○	○	○	×	×
덴마크	○	○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독 일	○	○	×	○(재보험)	○(재보험)
그리스	×	×	×	×	×
아일랜드	×	×	○ (해상, 항공)	○ (해상, 항공)	○ (해상, 항공)
이태리	×	×	×	×	×
일 본	×	×	×	○	○
룩셈부르크	○	○	×	×	×
네덜란드	○	○	○	○ (생보제외)	○ (생보제외)
뉴질랜드	○	○	○ (국제교역관련보험)	○	○
노르웨이	×	○	○ (해상)	○ (해상)	×
포르투갈	×	×	×	×	×
스페인	×	×	○ (국제교역관련보험)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국제교역관련보험)	○ (국제교역관련보험)
영 국	○	○	○	○	○
미 국	○	○	○	○	○
호 주	○	○	N.A.	N.A.	N.A.
아이슬랜드	○	○	N.A.	N.A.	N.A.
멕시코	×	×	N.A.	N.A.	N.A.
터어키	○	×	N.A.	N.A.	N.A.
제(25국)	×	×			
	(10국)	(10국)			

자료 : OECD 보험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94.1

IV.2.2. 경제적수요심사제도 폐지 및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 마련

- '97년 1월 보험회사의 설립허가 심사시 적용하던 「경제적 수요심사제

도(ENT)」를 폐지하였으며, 동년 4월 19일에는 OECD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제정하였음.

- 새로운 설립허가기준은 사업영위에 충분한 보험관련지식·경험과 사업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자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보험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임.<별첨 참조>

- 보험사업허가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및 심사기간(내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4개월, 내인가조건 이행 및 본인가신청기간 6개월, 본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2개월)은 내외국인간에 차별이 없으며, 허가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당국과 접촉하는 허가신청전 과정(pre-application precedures)*은 없음.

* 허가신청전 과정(pre-application precedures) : 공식적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허가당국과 접촉하는 과정으로서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

- 허가과정은 내허가절차와 본인가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별개의 허가행위가 아니라 연속된 허가과정임.

- o 내허가과정은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타당한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과정임.

- o 즉, 신청인의 재무상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상세히 하고 신청인 스스로 차질없는 영업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본허가는 내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의 납입, 인적물적 시설의 확보여부 등을 심사하는 과정임.
- 따라서 보험사업 허가신청자가 허가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국은 허가신청후 6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허가신청자에게 보험사업을 허가하게 됨.

IV.2.3. 5대계열기업집단의 생명보험업 한시적 참여허용

- 정부는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주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보험사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보험회사의 주주자격 및 부실보험회사의 인수·합병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보험산업의 진입규제를 200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
- 5대계열기업집단의 생명보험업 참여조건
 - 부실생보사 2개이상 인수하여 합병
 - 생보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1개 이상의 부실생보사를 인수 합병

IV.2.4. 재보험 전면자유화

- '97년 4월부터 화재보험,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에 대한 「국내사우선출제제도」 및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을 폐지함으로써 재보험시장의 자유화가 완료됨.

- 이에 국내사의 보유능력에 관계없이 해외출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보험사가 직접 외국 재보험사로부터 요율구득을 할 수 있게 되었음.

<IV-7> 재보험 자유화일정

구 분	1단계('93.4)	2단계('96.4)	3단계('98.4)
허용종목	○ 항공보험 ○ 재산종합보험	○ 선박보험 ○ 자동차보험 ○ 보증보험 ○ 적하보험 ○ 상해보험 ○ 근재보험 ○ 장기보험등	○ 화재보험 ○ 특종보험 ○ 기술보험 ○ 배상책임보험 ○ 동산종합보험

IV.2.5.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의 대외개방

- '98년 4월 외국인투자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었음.

IV.2.6. 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 폐지

- '98년 12월 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따른 허가제도를 폐지함.

IV.3. 업무영역 자유화

- '97년 7월 이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상해·질병·개호보험 등에 대하여 겸영을 허용하되, 과당경쟁을 억제하

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인 겸영을 허용하였음.

<IV-8> '97년 7월 이전 상해·질병·개호보험 상호겸영 허용내용

구 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개호보험
생명보험	부가계약	주 계약	부가계약
손해보험	주 계약	부가계약	부가계약

- 그러나 '97년 7월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에 대비하여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해·질병보험등 제3분야 보험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험상품개발을 통하여 생·손보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상해·질병·개호보험에 대하여 생·손보사가 상호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IV-9> '97년 7월 상품관리규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질병보험의 개발 : 질병보험을 개발할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업자는 상해보험을 주계약(인보험사업자는 부가계약)으로 영위하며, 질병보험은 부가계약(인보험사업자는 주계약)으로 영위한다.	○ 질병보험 등의 개발 : 질병보험 및 개호보험은 보험업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한 생·손보 겸영보험으로 생·손보 모두 주계약으로 영위한다.

IV.4. 모집제도 자율화

IV.4.1 독립대리점제도의 도입

- '96년 4월 이후 손해보험에 독립대리점 제도가 도입·시행한데 이어 '97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도 동제도가 도입·시행되었음.

<IV-10> 독립대리점 제도의 도입경과

구 분	도 입 시 기	
	손해보험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93.4	'94.4
독립대리점	'96.4	'97.4

주) 복수대리점은 2개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의미함.

IV.4.2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

- '97년 4월 손해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98년 4월에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동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보험중개업을 대외개방하였음.

<IV-11> 보험중개인제도 도입경과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내용	도입시기
손해보험	'97.4
생명보험	'98.4
대외개방	'98.4

- 보험중개인제도의 허가조건 및 업무범위

- 허가조건 :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하고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매년 수입규모에 연동)을 예탁하여야 함. 법인중개인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허가기간 : 3년마다 갱신
- 업무범위
 - 국내거주자와 국내보험사와의 보험계약체결 중개와 외국보험사와

의 재보험계약체결의 중개

-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등과 상호출자, 금전·물품 등의 점포공동사용, 인사교류 등을 할 수 없음.
- '98년 4월 보험중개인 시험응시자격(보험관련 연수이수, 보험업 근무경력등)을 폐지하였고, 보험중개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음.
- 보험중개인의 cross-border 중개는 재보험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음.
 - 중개조직을 이용할 경우 corss-border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국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 다만, 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보유할 수 없는 위험부분은 해외로의 출재가 불가피하므로 중개인을 통한 제공을 허용.

IV.5. 자산운용 규제완화

IV.5.1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 보험회사의 자금차입은 당좌차입, RP매도, 콜머니, 국채인수지원자금 등으로 대별됨.
- 외국보험회사 국내현지법인의 모회사로부터의 외화차입 허용('97.12)
- 후순위차입 허용('98.4)
 - '98년 4월부터 보험회사의 후순위차입을 통한 자금차입이 허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후순위차입의 요건

- i > 차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ii >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 iii >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 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함) 조건일 것.
- iv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 콜머니 차입한도폐지('98.12)

- o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중 제18조(자금차입)에서 단기 자금 과다차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머니 자금차입한도를 폐지

IV.5.2 자산운용수단의 다양화

- 자기계열집단과의 재산거래 제한 완화('98.6)

- o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 방지등 보험자금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자기계열집단과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을 매매·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비상장유가증권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시가격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익증권의 경우 부당내부거래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허용

- 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 및 대출제한의 한시적 폐지('98.4)

- o 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 및 대출제한은 200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함.

- 자율운용자산 한도('95.6)

- o 보험회사 총자산의 2% 범위내에서 자산의 자율운용을 허용.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축소/폐지

- o 기업대출 증가액의 35% 이상

- 어음할인대상에 대한 제한폐지('98.12)

- o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어음할인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상업어음, 무역어음 및 기타 감독원장이 허용한 어음에 한하여 인정하였으나 어음할인 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 기타

- o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지방운용제도 폐지('97.7)
- o 콘도미니엄등 생보사의 대출금지업종 축소('97.7)
- o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험투자한도 폐지('97.11)

V. 결론

- 이상 여러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보험산업은 과거 약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보험산업의 건전성확보와 질적 발전을 위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그 결과 짧은 기간내에 많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체제가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대외개방도 이루어져 경쟁적인 시장환경조성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지급여력제도 강화 및 개선, 보험보증기금제도 개선은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기구 통합 등의 제도적 정비는 향후 감독·평가의 효율성을 진작시킬 것으로 전망됨. 또한 가격 및 진입자유화와 모집, 영업, 자산운용 등 여러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는 보험산업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제도는 보험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는 OECD가입에 따른 이행규약과 최근 국제금융지원에 따른 이행각서 등에 의해 더욱 촉진되어 왔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보다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한국의 금융산업이 잘 적응해낼 경우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독기관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하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개혁적인 변모를 하였음. 이에 따라 감독수단에 있어서도 더욱 선진화된 기법을 사용할 것이며, 감독방법 및 과정에 있어서도 각 금융산업간에 복합감독 및 통합적인 감독을 통하여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다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는 아직까지 몇가지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및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과제 조속히 해결될 것임. 이러한 과제로는 먼저, 구조조정의 완결과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도입 등의 제도적인 과제와 개별보험회사에 의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더욱 정교한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금융위기상황에서 유발된 높은 예정이자율의 저축상품에 의한 채무증가문제 등을 들 수 있음.

<별첨 1> 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계산사례

<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계산사례>

(단위 : 천원)

지급여력 합산항목	금 액	지급여력 차감항목	금 액
가. 납입자본금	33,000,000	가. 이연자산	-
나. 자본잉여금	54,000,000	나. 자기주식	1,000,000
다. 이익잉여금	13,000,000	다. 자본의 50%이상인 잠식된 회사 또는 조합 등의 주식 또는 지분	-
라. 제97조준비금	300,000	라. 선급비용	80,000
마. 비상위험준비금	13,000,000	마.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	800,000
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바. 대손충당금 부족액	800,000
사.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금액	17,000,000		
아. 후순위차입금	-		
합 계	130,300,000	합 계	2,680,000

○ 지급여력 : 127,620,000(=130,300,000 - 2,680,000)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중 큰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화 재	해 상	자동차	보 증	기타특종	합 계
보유보험료	11,354,969	6,599,229	283,846,210	440,413	13,851,158	31,091,999
발생손해액	7,925,861	3,215,605	183,888,349	1,643,800	7,405,484	20,079,099
보험료기준 지급여력	2,361,838	983,285	51,660,010	65,622	914,176	㉠5,984,931
보험금기준 지급여력	3,122,789	662,415	44,684,869	338,623	747,954	㉡4,556,650

주: 1.보유보험료는 과거 1년실적, 발생손해액은 과거 3년간 평균실적

2.보험료기준산출액 : 보유보험료×보험료기준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 : 화재 20.8%, 해상 14.9%, 자동차 18.2%, 보증 14.9%, 기타 6.6%

3.보험금기준 산출액 : 과거 3년간 평균 발생손해액×보험금기준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 : 화재 39.4%, 해상 20.6%, 자동차 24.3%, 보증 20.6%, 기타 10.1%

○ 지급여력 : 55,984,931천원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의 투자위험의 지급여력기준(㉔의 1%)>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합 계
금 액	114,462,003	497,732,135	137,750,994	◎749,945,132

- 지급여력 : 7,499,451천원
- 해외출재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㉔의 2%) : 102,344천원
→ 과거 1년간 해외출재보험료 : ㉔5,117,205천원
- 지급여력기준(가+나+다) : 63,586,726천원
- 지급여력 : 127,620,000천원
- 지급여력기준 대비 지급여력비율(마/라) : 200.7%

<별첨 2>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차 금융감독위원회 의결('98.4.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외국보험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외국보험사업자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사업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사업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광고) ①외국보험사업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신문, TV,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사업자의 상호 및 그 본점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외국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내용에 당해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외국보험사업자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지면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이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 또는 화상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청취 또는 시청이 가능한 속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광고금지사항) 외국보험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사업자와 비교한 사항

제6조(보험계약체결 등에 대한 감독) ①감독원장은 외국보험사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사업자에 대

하여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방법)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사업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확인방법) ①거주자는 외국보험사업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 ①감독원장은 199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한다.

②감독원장은 국내에서 영위되는 2이상의 보험종목이 결합된 보험상품 및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과 국내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이 결합된 보험상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③거주자는 이 규정의 시행전에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이 이 규정시행후에 국내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우에도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①협회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4.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종전의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7-10호('97.2.25)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규정중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보험감독원장으로 본다.

<별첨 3>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

재정경제원고시 제1997-18호('97.4.19)

1. 용어의 정의

가. 이 기준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하며,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나. 이 기준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다. 이 기준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라. 이 기준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마. 이 기준에서 “최대출자자”라 함은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내국인 출자자중 가장 많이 출자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바. 이 기준에서 “대주주”라 함은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이 높은 순으로 출자비율을 누계하여 총지분의 100분의 51 이내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사. 이 기준에서 “자기자금”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자금을 말하며,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일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계열회사의 처분 또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2. 주주의 자격

가. 내국인 주주

1) 보험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가)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위 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금융기관여신판리대상계열기업군(이하 “계열기업군”)중 상위 5위 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 다만, 위 기준에 의한 상위 10위 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중 참여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상위 10위 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각각 또는 합계하여 당해 보험회사가 발생하는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거나 이를 지배할 수 있다.

나) 생명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그 최대출자자(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와 그 최대출자자(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대주주는 다음 “가)”호의 요건을 갖추고 일반법인·금융기관·개인별로 각각 “나)”호 내지 “라)”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가) 공통

- ① 출자액의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자
- ② 부실기업정리대상(산업합리화대상) 법인 및 그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나) 일반법인

- ① 비금융기관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고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
- ②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자
- ③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인 자. 다만,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설립될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액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내인 자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최대출자자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다) 금융기관

- 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7,000억원 이상이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인 자

② 증권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이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③ 보험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조 5천억원 이상이고 감독기관이 정한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라) 개인

①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의 최대출자자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기타

기존 합작보험회사의 내국인 최대출자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본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호 내지 “라)호의 대주주 요건중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외국인 주주

보험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국에서 보험사업허가(생명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사업허가, 손해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사업허가, 재보험업의 경우 재보험사업허가, 보증보험업의 경우 보증보험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자. 다만, 외국인주주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 주주에 대한 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2)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

다. 주주자격의 적용

- 1) 순수내국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적용한다.
- 2) 합작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게는 내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주주자격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 3)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적용한다.
- 4)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준용한다.

3.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 등

가. 최소납입자본금 : 300억원

나. 최소영업기금(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 30억원

다.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은 모두 원화로 납입하여야 한다.

라. 납입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으로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 허가신청서류의 제출

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의 서류를 제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보험사업허가신청서 및 각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들 서류와 기타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에는 공증인에 의한 공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영사관 확인(영사관확인대상이 아닌 서류를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5. 허가심사기준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내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나. 주주 및 임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험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사회적 신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1) 이 기준에 의한 주주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내국인 대주주의 경우 금융부실거래실적,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기록, 주주배당(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적

3) 외국인 주주의 경우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주주배당(상호회사인 경우 계약자배당을 말한다) 실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

4) 임원의 금융부실거래실적,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기록, 등기된 총임원의 2분의 1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

다. 허가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출자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1) 신설될 보험사의 수지 및 손익전망, 모집인 또는 대리점 확보계획등 사업계획이 적정하고 양호한지의 여부(사업계획 또는 정관에 사업비를 이연하고 상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 사업년도별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증자 또는 사업비 절감계획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라.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자 보호에 곤란함이 없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지의 여부

6. 허가절차 및 허가심시기간

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월내에 내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나. 내허가를 받은 자는 내허가일부터 6월내에 내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자본금 납입등 영업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본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내에 실사를 통하여 내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영업개시 준비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 보험사업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자는 60일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마. 담당공무원은 허가신청자에게 허가신청서류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신청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허가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허가신청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2) 허가신청서류의 내용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요구에 대하여 허가신청자 또는 그 관계자가 그 이행을 게을리한 기간
-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사. 재정경제원장관이 내허가 또는 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허가신청자에 대한 허가거부 사유의 통보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준용한다.

7.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준수사항

- 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보험, 은행, 증권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 나.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본국에 있는 본점과는 독립된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결손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내에 본점에서 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 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이익잉여금을 본점 등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때에는 송금일을 정하여 10일전에 보험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87.12.29 발표, '96.5.30 개정),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설립허가기준('88.3.18 발표, '95.12.27 개정) 전국규모의 순수내국생명보험회사의 허가기준('88.5.30 발표, '96.5.30 개정) 및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설립허가기준('87.6.15 발표, '95.12.27 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이 기준 시행당시 부칙 2의 폐지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록 1>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1. 내허가 신청시

가.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나. 정관(안)

다. 사업방법서(안)

라. 보험약관(안)

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안)

- “다” 내지 “마”의 기재사항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

바. 설립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 연도별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 연도별 보험종목별 추정계약 성적표
-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서
- 연도별 영업조직(모집인, 대리점) 확보 및 영업계획서
- 연도별 직종별 인력확보 및 운용계획서
- 기타 참고서류

사. 설립후 5년간의 지급능력확보계획서

- 예상지급능력규모
-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증자 또는 사업비 절감등)

아. 발기인 회의 의사록

자. 발기인 이력서

차.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카. 주식인수계획서(안)

타. 합작계약서, 합작회사 대표자 이력서(합작보험회사의 경우)

파. 주주의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 포함

- 주주가 외국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서 정한 서류 포함

하. 각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며 서식은 별첨 2와 같다)

2. 본허가 신청시

가.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대표자 서명날인)

나. 내허가 신청시의 제출서류중 “나”호 내지 “사”호의 서류(내허가 신청시와 동일한 경우 제출 불요)

다. 본점 및 점포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라. 창립총회 의사록

마. 회사의 등기부 등록서

바. 자본금 및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아. 대주주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자.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차. 기타 내허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록 2> 각서

수신 : 재정경제원 장관

각 서

본인은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업허가의 취소 기타 여하한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법령, 대한민국 정부 또는 보험감독당국의 명령·지시 및 보험회사간의 상호협약과 보험사업허가조건 및 보험사업 기초서류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이 발행한 보험증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점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의 자산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보험청구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부족하거나 우리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을 폐쇄할 때에는 본점이 직접 보험증권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보험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지시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토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의 명칭 :
대표자의 직위 :
성 명 :